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시 유의사항

지난 2011년 4월 14일에 공포된 상법(이하 '개정상법')과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12년 3월 28일, 이하 '개정상법 시행령(안)')*은 배당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하도록 하였다. 이하에서는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정의와 개정상법 및 개정상법 시행령(안)에따른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2012년 4월 5일 최종 공포 예정

1. 배당가능이익의 계산방법과 미실현이익의 정의

배당가능이익의 계산방법은 개정상법 제462조 제1 항에 규정되어 있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1. 자본금의 액
 -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심현이의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은 개정상법 시행령(안) 제19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법 제46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 현이익'이란 <u>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u>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치대조표상의 순 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 을 말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을 말함(개정상법 시행령(안) 제15조)

2. 개정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계산을 위한 유의사항

(1)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기준 재무제표:

개별(별도) 재무제표

개정상법 제462조 제1항을 살펴보면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순자산액의 기준 재무제표가 '대차대조표' 로 규정되어 있다. 개정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에서 '대차대조표' 와 '연결재무제표' 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62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 라는 K-IFRS에 따른 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연결재무제표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 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u>대차대조표</u>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職 結及務議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본금

개정상법 제462조 제1항 제1호의 '자본금' 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개정상법 제451조 제1항,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제외)으로, K-IFRS상 '자본금' 과 일치한다

* 자본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을 요구했던 舊기업회계기준서(이하 'K-GAAP')과는 달리 K-IFRS는 자본을 크게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의 3가지로 분류하고 기업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음.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3) 자본준비금

개정상법 제462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준비금'은 **차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것**(개정상법 제459조 제1항)'을 말한다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란 개정상법 시행령 (안)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개정상법 시행령(안) 제18 조)'을 의미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말함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 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자본준비금의 원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자본준비금의 원천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개정상법 제459조 제1항). 그런데 개정상법이나 舊상법에 '자본거래'에 대한 정의가 없다. 다만, 舊상법 제459조는 자본잉여금의 종류를 열거(주식발행초 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한 바 있어(개정상법에서는 관련 사례가 삭제됨), 이를 통해 상법상 '자본거래'의 의미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2) 자본준비금의 적립방식: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름

상장회사는 K-IFRS에 따라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계상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자본잉여금'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표시 할 것을 요구했던 K-GAAP과는 달리 K-IFRS는 '자본잉여금'을 별도로 정의하거나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개정상법상 자본잉여금과 K-IFRS상 자본잉여금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있다.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7에서 '소 유주(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 개념을 도입하고, 동 기준서 BC 49에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소 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거래는 자본변동표에 표시된다'라고 하여 기업 순자산의 변동을 '소유주와의 거래(자본변동표에 표시)'와 '비소유주와의 거래(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및 분류방식은 K-GAAP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에서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는 자본잉여금의 정의와 큰 차이가 없고, 舊상법에서 열거했던 자본잉여금의 용 종류(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와도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K-IFRS에서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대신 자본변동표에 표시되는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을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 보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이 있다.한편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는 K-IFRS상 자본항목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31~32).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모두 자본항목으로서 잠재적 소유주와의 거래에서 자본의 가산항목으로 계상된 것이므로 이들 역시자본잉여금의 한 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개정상법상 대표적인 법정준비금(개 정상법 제458조)이므로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 비금과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배당예 정액의 1/10)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한다.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 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미실현이익

개정상법에서는 미실현이익을 법 제446조의2의 회계원칙(상장기업의 경우 K-IFRS)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話)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앞서 기술하였다.

상기 정의를 요소별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미실현이 익은 ① K-IFRS에 따라, ②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결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③ 순자산 증가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기 전의 금액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법상 미실현이익의 정의에 부합하는 K-IFRS 수익(이익)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K-IFRS상 분류(표시) 방법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K-IFRS는 수익과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88),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 오류 수정 및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89). 이때 기타포괄손익이란 '다른 K-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을 말하며,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7).

- (1) 재평가잉여금의 변동(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과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참조)
-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참조)
-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참조)

(5)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 적인 부분(K-IFRS 제1039호 참조)

1) K-IFRS상 당기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

지분법이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부채) 평가이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액 등은 'K-IFRS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 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라는 개정상법상 미실 현이익의 정의에 부합한다.

다만, 당기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은 이익잉여금 마감절차를 통해 순자산에 반영되므로 관련 자산의 최 초 인식시점 이후 후속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의 증감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한 관리 없이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이익잉여 금 중 미실현이익 누계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상법 시행령(안) 부칙 제6조에서는 이와 같은 기업의 실무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제6조(미실현이익에 관한 경과조치)

회사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 으로 순자산액에 반영한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미 실현이익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실현이익에 포함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상기 경과규정으로 인해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3년 3월 31일)까지는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제외하지 않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당기순익을 통해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미실현이익 누계액 관리는 개정상법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3년 1월 1일,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4년 4월 1일)부터 신규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K-IFRS상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보험 수리적 이익 등도 개정상법상 미실현이익의 정의에 부 합한다. 다만 이들 항목은 당기순익을 통하지 않고 재 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직접 반영하여 계 상되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계상된 기타포괄손익누 계액은 관련 자산이 제거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조정(일종의 실현손익化)되 어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언제나 특정 시점 현재의 관련 항목 누계액으로 표시되므로 미실현 이익 누계액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절차는 불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3) 기타사항

당기손익이나 포괄손익에 반영된 손익 사항 중 어떤 항목이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인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K-IFRS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계정과목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자산, 부채의성격과 회계처리 유형별로 개정상법상 미실현이익의정의에 부합하는 항목을 판단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 현이익은 제외하도록 하는 반면 미실현손실은 가산시 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 실을 상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실현이익만을 배당가 능이익 계산시 차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 하여야 한다. 만일, 매도가능증권 계정에서 평가이익 과 평가손실이 각각 300원, 1,000원 발생하여 재무상 태표에 700원의 순손실로 계상(순자산 700원 감소효 과)하였다 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는 300 원을 추가로 제외하여야 한다. 이는 관련 항목별로 미 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별도로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K-IFRS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 법인 세 효과를 차감한 상태로 계상되어 있는 바, 개정상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미실현이익이 관련 법인세 효과를고려하기 전의 금액인지, 고려 후의 금액인지 여부가불명확한 상황이다. 다만, 개정상법상 미실현이익을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인세 효과를 고려한 후의 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순자산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반영한 금액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K-IFRS를 최초채택한 상당수의 상장기 업들이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에 따라 K-GAAP상 자본잉여금에 계상되 었던 유형자산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변경한 바 있다.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은 상법상 미실 현이익의 정의에 부합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서 재무상태표상 계상 위치(자본잉여금 혹은 이익잉여금) 에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원칙적으로 차감하 는 것이 타당하다. 당초 개정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2012. 2. 6) 부칙 제2조에서도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기순익을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순자 산액에 반영한 미실현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보지 않 는다'고 하여 '당기순익'을 통해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미실현이익만을 경과규정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 과 '당기순익'을 통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에서 이익잉 여금으로 바로 재분류된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은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 다. 그러나 개정상법 시행령(안) (2012년 3월 28일)에서 는 '당기순익' 부분이 삭제되고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순자산액에 반영한 미실현이 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에 따라 유 형자산 재평가이익도 부칙 제2조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배당재원으로 활용가능). 이 와 같은 논리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직행한 보험수 리적손익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K-IFRS 제 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93A ~ 93D 참조). ▶

토막 상식

국가자본주의(國家資本主義, State Capitalism)

국가가 경제 주체의 하나로 상업적 활동에 나서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유(국영) 기업과 국유 상업은행, 국부펀드 등을 앞세워 경제 행위를 한다. 해당 국유기업은 국내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규모를 키운 뒤,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인수합병(M&A)에 나서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4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부펀드 역시 국가자본주의의 산물로 세계 자원·금융·부동산 분야의 '큰손'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집권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국유기업의 대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자본주의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